

군산시 공고 제2017-1467호

공 고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함.
- 징수한 금액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3조제3항)
- 폐기물사업은 장기적이고 비정기적인 경우가 많아 특별회계로 운영됨이 타당하며 추세에 맞추어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시행자 등의 정의(안 2조)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 제출(안 제3조)
-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액 산정(안 제4조~ 제6조)
- 라.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및 납부방법(안 제7~제8조)
- 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안 제9조~ 제16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063-454-3453, FAX : 063-452-8166)
- 전자우편 : ilugirl@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계(전화: 454-3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군산시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제2장 납부계획서 제출 및 납부금액 산정 등

제3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 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4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매입에 드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이하 “부지”라 한다)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조보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4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부과에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분할납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특별회계 설치 등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국가 또는 전라북도의 보조금·용자금·교부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다만 제11조제1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한 경우에 한함)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부대사업 비용
2.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2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제13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14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5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가. 시설부지 면적**

구 분		소 요 면 적	비 고
폐기물 처리시설	100톤/일 이하	40㎡(12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100~300톤/일	30㎡(9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300~500톤/일	20㎡(6평)/톤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500톤/일 초과	10~15㎡/톤 (3~4.5평)	1기 기준 4,000㎡(1,200평)이하
관리동	500톤/일 이하	330㎡(100평)	작업인원 35~50명 기준
	500톤/일 초과	500㎡(150평)	작업인원 50~70명 기준
세차동 등 기타시설	500톤/일 이하	330㎡(100평)	-
	500톤/일 초과	500㎡(150평)	-
건 폐 율		40% 이하	계획관리지역 기준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 시설부지면적의 10% 적용

다.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시설인 경우 폭 10m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시설인 경우 폭 20m이상

총 부지면적 = 시설부지 면적(가) + 주민편익시설 면적(나) + 주변녹지대 면적(다)

군산시 공고 제2017-1494호

공 고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2012년 이후 동결로 처리비에 대한 가격 현실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효과 제고 및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가격조정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상위조례 제목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목 개정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별표 개정 (안 제4조)

-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기준 (안 별표 2)

-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수수료 (안 별표 2)

*수수료 현실화율 반영

다. 상위조례 근거 조·항 수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전화 : 063-454-3462, FAX : 063-452-8166)
- 전자우편 : belche@korea.kr

다.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 등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자원순환과 재활용계(전화: 454-3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 칙 명 :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고
	찬성	반대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법안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3조 중 “제9조”를 “제16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1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3조와 관련]

종 류	규 격 (내부용량)	구 조	허용오차	재 질
일반주택용	5L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음식점용	20L	뚜껑이 있는 원형의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120L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공동주택용	120L	용기하부에 바퀴부착 및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3%	플라스틱 (PE, HDPE)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제4조와 관련]

1. 납부칩

(단위 : 원)

구 분	판매단위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이윤 (12%)	판매가격
일반주택	1회용	5 L	220	30	250
음식점	1회용	20 L	880	120	1,000
		120 L	5,280	720	6,000
공동주택	1회용	120 L	5,280	720	6,000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70원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종류 및 규격
[제5조와 관련]

규 격	색 상	모 형
5L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20L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L	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시마크, 군산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 ③ 제작방법 : 규격별로 색상과 크기를 달리하여 상호 호환되지 않도록 제작
- ④ 규격, 색상, 디자인 :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u>」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u>군산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u>」(이하 ‘조례’라 한다)</p> <p>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지 1과 같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조례 <u>제9조</u>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조례 <u>제12조</u>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p>	<p><u>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 「<u>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u>」-----.</p> <p>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u>군산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u>」----- ----- ----- -----.</p> <p>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 <u>제16조</u> ----- ----- ----- -----.</p> <p>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 <u>제10조</u> ----- -----</p>

현 행	개 정 안
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 -----.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조례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납부칩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 제11조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칩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및 납부칩 공급) --- 제14조----- -----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단위: 원)	별표2 음식물류폐기물 납부칩 등에 의한 수수료 (단위: 원)																																																				
1. 납부칩	1. 납부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판매 단위</th> <th>용기 규격</th> <th>공급액</th> <th>판매 이윤 (10%)</th> <th>판매 가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 주택</td> <td rowspan="2">1회용</td> <td>5 L</td> <td>180</td> <td>20</td> <td>200</td> </tr> <tr> <td>20 L</td> <td>720</td> <td>80</td> <td>800</td> </tr> <tr> <td rowspan="2">음식점</td> <td rowspan="2">1회용</td> <td>120 L</td> <td>4,320</td> <td>480</td> <td>4,800</td> </tr> <tr> <td>120 L</td> <td>4320</td> <td>480</td> <td>4,800</td> </tr> </tbody> </table>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0%)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 L	180	20	200	20 L	720	80	800	음식점	1회용	120 L	4,320	480	4,800	120 L	4320	480	4,8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판매 단위</th> <th>용기 규격</th> <th>공급액</th> <th>판매 이윤 (12%)</th> <th>판매 가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 주택</td> <td rowspan="2">1회용</td> <td>5 L</td> <td>220</td> <td>30</td> <td>250</td> </tr> <tr> <td>20 L</td> <td>880</td> <td>120</td> <td>1,000</td> </tr> <tr> <td rowspan="2">음식점</td> <td rowspan="2">1회용</td> <td>120 L</td> <td>5,280</td> <td>720</td> <td>6,000</td> </tr> <tr> <td>120 L</td> <td>5,280</td> <td>720</td> <td>6,000</td> </tr> </tbody> </table>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2%)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 L	220	30	250	20 L	880	120	1,000	음식점	1회용	120 L	5,280	720	6,000	120 L	5,280	720	6,000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0%)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 L	180	20	200																																																
		20 L	720	80	800																																																
음식점	1회용	120 L	4,320	480	4,800																																																
		120 L	4320	480	4,800																																																
구분	판매 단위	용기 규격	공급액	판매 이윤 (12%)	판매 가격																																																
일반 주택	1회용	5 L	220	30	250																																																
		20 L	880	120	1,000																																																
음식점	1회용	120 L	5,280	720	6,000																																																
		120 L	5,280	720	6,000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50원	2. RFID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장비(공동주택) : kg 당 70원																																																				

군산시 고시 제2017-10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38호선 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2015-27호(2015.02.13.)로 우리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38호선의 2개노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94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변경전) 군산시 당북리 에스엠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중로2-138호선의 외 2개노선)개설공사

(변경후) 군산시 당북리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도로(중로2-138호선의 외 2개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분할측량 결과 반영

구분	노 선 명	실시계획인가(당초)			실시계획인가(변경)			증감
		폭원(m)	연장(m)	면적(m ²)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로	중로2-138	15	192	2,743	15	192	2,744	증 1m ²
	소로2-612	8	111	925	8	111	923	감 2m ²
	소로2-619	8	37	323	8	37	324	증 1m ²
계	3개노선	8~15	600	3,991	8~15	600	3,991	-

4. 사업시행자(변경)

(당초) 가.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7 , 5층

성명 : 에스엠주택건설 주식회사 대표 장길현

나. 주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안전로 151, 5층(대산빌딩)

성명 : 유한회사 디앤에스 대표 유민섭

(변경)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43-7, 5층

성명 : 에스엠주택건설 주식회사 대표 장길현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당초) 2015. 03. 02 ~ 2017. 08. 31.

(변경) 2015. 03. 02 ~ 2017.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 편입부지 전체 및 시설물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분할측량)

1) 중로2-138호선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지곡동	48	54	전	20	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	지곡동	48	56	대	5	5	신후상	군산시 지곡동 48-17				
3	지곡동	48	57	전	48	48	신후상	군산시 지곡동 48-17				
4	지곡동	49	8	전	337	337	이명순	경기도 용인시 주지구 성북1로 107, 513동 1702호 (성북동, 성남마을벽산아파트)				
5	지곡동	49	10	전	1	1	국(재무부)					
6	지곡동	50	1	전	5	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	옥산면 당북리	935	16	답	12	1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8	옥산면 당북리	935	8	답	57	5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9	옥산면 당북리	937	2	대	1	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0	옥산면 당북리	938	1	전	162	16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1	옥산면 당북리	940	4	전	252	252	안태호	군산시 영동로 28-1(영동)				
12	옥산면 당북리	941	2	대	826	826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	옥산면 당북리	941	6	대	101	101	안태호	군산시 영동로 28-1(영동)				
14	옥산면 당북리	942	20	대	7	7	이명숙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21, 204호(갈마동 썬빌리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5	옥산면 당북리	942	21	대	122	122	이명숙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 141번길 21, 204호(갈마동 썬빌리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6	옥산면 당북리	943	3	전	420	42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7	옥산면 당북리	944	1	묘	171	17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8	옥산면 당북리	945	6	묘	79	79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츠 202동 1202호				
19	옥산면 당북리	945	7	도	25	25	미등기					
20	옥산면 당북리	947	4	대	22	2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1	옥산면 당북리	994	15	도	71	71	국(농수산부)					
계	21필지				2,744	2,744						

2) 소로2-612호선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북리	945	11	대	70	70	이명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11, 401호 (예천동)				
2	옥산면 당북리	945	12	묘	99	99	이명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11, 401호 (예천동)				
3	옥산면 당북리	945	13	묘	21	21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츠 202동 1202호				
4	옥산면 당북리	946	5	대	41	4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5	옥산면 당북리	946	6	전	72	72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6	옥산면 당북리	950	6	대	31	3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7	옥산면 당북리	950	7	대	59	59	국(재무부)					
8	옥산면 당북리	951	6	전	174	174	이명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11, 401호 (예천동)				
9	옥산면 당북리	951	7	전	51	51	이명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100 가든하이츠 202동 1202호				
10	옥산면 당북리	953	11	전	3	3	이명순	충청남도 서산시 호수공원10로 11, 401호 (예천동)				
11	옥산면 당북리	957	38	도	436	26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2	옥산면 당북리	957	40	답	1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	옥산면 당북리	959	14	도	19	19	군산시					
14	옥산면 당북리	959	16	도	1	1	군산시					
15	옥산면 당북리	994	21	도	20	20	국(농수산부)					
계	15필지				1,098	923						

3) 소로2-619호선 (변경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 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본번	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옥산면 당북리	956	19	도	133	133	군산시					
2	옥산면 당북리	957	38	도	436	17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	옥산면 당북리	959	12	답	16	1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계	3필지				585	324						

군산시 고시 제2017-10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4-188호(2014.07.18.)호로 최초 결정되어 준공·운영중인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조촌동 671-13번지 외 29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 나. 명 칭 : 동군산병원 증축공사(본관동)
3. 사업의 규모(변경)
 - 가. 시설면적 : 14,564㎡ → 14,463㎡ (감 101㎡)
 - 나. 대지면적 : 12,847㎡ → 12,746㎡ (감 101㎡)
 - 다. 동수/층수 : 3동/8층 → 3동/10층 (본관동 2개층 증축)
 - 라. 건축면적(건폐율) : 2,899.56㎡(46.34%) → 2,899.56㎡(46.71%)
 - 마. 건축연면적(용적률) : 14,337.10㎡(151.88%) → 16,159.66㎡(167.39%)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로 149
 - 나. 성 명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군산시 조촌동	671-10	대	515	515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	군산시 조촌동	671-13	대	4,724	4,703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3	군산시 조촌동	671-39	도	26	3	군산시				
4	군산시 조촌동	671-52	도	268	268	군산시				
5	군산시 조촌동	671-54	도	151	151	군산시				
6	군산시 조촌동	671-55	차	596	495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7	군산시 조촌동	671-56	도	73	73	군산시				
8	군산시 조촌동	672-9	전	397	397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9	군산시 조촌동	672-10	차	727	727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0	군산시 조촌동	672-11	대	151	151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1	군산시 조촌동	672-12	차	509	509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2	군산시 조촌동	672-24	도	562	155	군산시				
13	군산시 조촌동	672-27	도	155	155	군산시				
14	군산시 조촌동	672-28	차	240	240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5	군산시 조촌동	672-29	도	37	37	군산시				
16	군산시 조촌동	672-31	도	74	74	군산시				
17	군산시 조촌동	672-32	전	393	393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18	군산시 조촌동	672-33	도	451	451	군산시				
19	군산시 조촌동	673-2	도	916	222	국(건설부)				
20	군산시 조촌동	678-7	차	744	744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1	군산시 조촌동	678-9	전	2,501	2,501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2	군산시 조촌동	678-10	도	71	71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3	군산시 조촌동	678-11	차	340	340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4	군산시 조촌동	678-12	도	124	5	군산시				
25	군산시 조촌동	678-13	도	154	154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6	군산시 조촌동	678-14	차	806	806	의료법인오성의료 재단동군산병원	군산시 조촌동 671-13			

27	군산시 조촌동	678-20	도	45	45	군산시				
28	군산시 조촌동	678-21	도	19	19	군산시				
29	군산시 조촌동	678-22	도	15	15	군산시				
30	군산시 조촌동	678-23	도	44	44	군산시				
합 계				15,828	14,463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공사설계도서 및 관련서류 : 게재 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7-10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5일
군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	12	집산도로	530	명산동 중1-3	중앙동 중2-3	일반도로		건고37 ('76.3.27)	
변경	중로	3	4	12	집산도로	640	명산동 중1-3	중앙동 중2-3	일반도로		건고37 ('76.3.27)	
기정	소로	2	32	8	국지도로	42	명산동 17-8 중3-4	송창동 소3-47 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2	32	8	국지도로	42	명산동 17-8 중3-4	송창동 소3-47 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36	8	국지도로	526	명산동 18-1 중1-3	오룡동 834-79 소3-35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2	36	8	국지도로	526	명산동 18-1 중1-3	오룡동 834-79 소3-35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37	8	국지도로	65	명산동 18-24 중3-4	명산동 24-7 소2-36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2	37	8	국지도로	65	명산동 18-24 중3-4	명산동 24-7 소2-36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60	명산동 16-10 중1-3	명산동 소2-5	일반도로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3	6	6	국지도로	105	명산동 16-10 중1-3	명산동 소2-5	일반도로		전북고135 ('78.5.22)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중로3-4	중로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류정정 및 선형조정 연장 : 530m → 640m 면적 : 7,680㎡ → 7,7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오류정정 개설 완료된 도로로써 선형정비 	
소로2-32	소로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조정 면적 : 418㎡ →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설 완료된 도로로써 선형정비 	
소로2-36	소로2-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조정 면적 : 4,239㎡ → 4,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설 완료된 도로로써 선형정비 	
소로2-37	소로2-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형조정 면적 : 602㎡ → 5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설 완료된 도로로써 선형정비 	
소로3-6	소로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류정정 및 선형조정 연장 : 160m → 10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오류정정 지적재조사에 따른 선형정비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실음생략

※ 관련도서를 군산시 도시계획과(☎063-454-3504)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군산시 고시 제2017 - 10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24일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7-0009호 (2017. 08. 24.)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 성명 : (주)LG유플러스
- ③ 허가목적 : 통신관로 매설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 산8-2번지 인근 공유수면
- ⑤ 면 적 : 70.6㎡
- ⑥ 허가기간 : 2017. 08. 24. ~ 2026. 08. 23.까지

군산시 고시 제2017 - 107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디오션시티 A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주)디오션시티쓰리
 - 나. 대표자 : 고영호
 - 다. 주 소 : 군산시 구암로 50(조촌동)
3. 시 공 자
 - 가. 명 칭 : (주)삼호
 - 나. 대표자 : 추문석
 - 다.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구월동)
4.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41-20외 3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21,112㎡
 - 라. 건축면적 : 3,777.6015㎡
 - 마. 연 면 적 : 69,963.0049㎡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4개동외 423세대
 -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423				
84A	민영주택	202	84.9959	24.5813	109.5772	
84B	민영주택	109	84.9625	26.0971	111.0596	
114	민영주택	110	114.1060	31.9662	146.0722	
143	민영주택	2	143.3698	42.9868	186.3566	

- 아.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자. 사 업 비 : 123,777,496천원
- 차. 사업기간 : 2017년 9월 4일 ~ 2020년 3월 4일
- 5.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 6. 사업계획승인일 : 2017. 8.24.
-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7 - 10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사업명 : 군산 미룡동 도시형 생활주택

2. 사업주체

가. 명 칭 : 주식회사 이수종합건설

나. 대표자 : 이홍수

다.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6, 801호 (빛가람동)

3. 사업내용

가. 사업위치 : 미룡동 361번지 외 2필지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분양),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다. 대지면적 : 1,251.0000㎡

라. 건축면적 : 424.7998㎡

마. 연 면 적 : 3,776.1074㎡

바. 건축규모 : 지하 1층, 지상9층 /아파트 1개동, 총69세대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비고
계		69				
33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8	20.7125	12.9285	33.6410	
38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56	23.6825	14.5777	38.2602	
46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5	29.0049	17.5732	33.6410	

아.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업비 : 7,466,610천원

차. 사업기간 : 2017년 9월 4일 ~ 2018년 5월 3일

4.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설계도서와 같음

5. 사업계획승인일 : 2017. 8. 25.

6.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3)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17-10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 군산간호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군산간호대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군산 도시계획시설(학교 : 군산간호대학교)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학 교	대 학 (군산간호대학교)	개정동 413-1 일원	27,708	-	27,708	전북고334 (82.12.26)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구성비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708	-	27,708	100.0		
기정	-	교사시설	개정동 413-7 일원	10,088	-	10,088	36.4	'12.3.16	
기정	-	체육시설	개정동 31-5 일원	1,804	-	1,804	6.5	'12.3.16	
기정	-	조경시설	개정동 32-3 일원	6,922	-	6,922	25.0	'12.3.16	
기정	-	교통시설	개정동 413-1 일원	7,222	-	7,222	26.1	'12.3.16	
기정	-	기타시설	개정동 413-11 일원	1,672	-	1,672	6.0	'12.3.16	

○ 세부시설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세부시설명	부지면적(m ²)			건축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7,708	-	27,708	5,470	-	5,470	17,722	-	17,722	
교사 시설	소 계	10,088	-	10,088	5,186	-	5,186	17,438	-	17,438	
	본관동	1,162	-	1,162	516	-	516	2,099	-	2,099	
	아미관	624	-	624	217	-	217	599	-	599	
	미래관	1,480	-	1,480	950	-	950	3,700	-	3,700	
	행정관	713	-	713	351	-	351	1,080	-	1,080	
	신관동	1,656	-	1,656	714	-	714	1,899	-	1,899	
	도서관	729	-	729	339	-	339	677	-	677	
	아원학사	1,687	-	1,687	955	-	955	3,333	-	3,333	
	경암관	1,417	-	1,417	812	-	812	2,805	-	2,805	
	경암학사2동	280	-	280	166	-	166	623	-	623	
	경암학사3동	340	-	340	166	-	166	623	-	623	
체육 시설	소 계	1,804	-	1,804	-	-	-	-	-	-	
	운동장	1,148	-	1,148	-	-	-	-	-	-	
	농구장	656	-	656	-	-	-	-	-	-	
조경 시설	소 계	6,922	-	6,922	-	-	-	-	-	-	
	화단, 녹지 등	6,922	-	6,922	-	-	-	-	-	-	
교통 시설	소 계	7,222	-	7,222	-	-	-	-	-	-	
	도로, 주차장 등	7,222	-	7,222	-	-	-	-	-	-	
기타 시설	소 계	1,672	-	1,672	284	-	284	284	-	284	
	창 고	472	감)472	-	105	감)105	-	105	감)105	-	삭제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	증)472	472	-	증)105	105	-	증)105	105	신설
	박물관	1,200	-	1,200	179	-	179	179	-	179	문화재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도면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7-11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25외 1개노선)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25, 소로3-629)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29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470번지 외 4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임피 지구단위구역 도시계획시설(취락지구:도로)사업
 - 나. 명 칭 : 임피 대흥교회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설명	노 선 명	결정조서		금회 실시계획인가			최초 결정일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로	중로 2-125	15	441	8	22	186	군산고81 (2010.7.15)
	소로 3-629	6	370	6	77	479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161-11 호원아키텔 324호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 대표 선성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07. 10. 12. ~ 2017. 8. 31.
변경 2007. 10. 12. ~ 2019. 8.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등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가. 무상귀속 :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전체
 - 나. 무상양여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중로2-125호선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470	전	853	51	국)기획재정부	-			
2	470-1 3	전	106	89	국)기획재정부	-			
3	647	도	9,849	46	국)건설교통부	-			
합계		3필	10,808	186					

○ 소로3-629호선

순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권리 내용	
1	470	전	853	136	국)기획재정부	-			
2	470-2 1	전	77	77	이희준	군산시 임피면 남산로 61			
3	470-2 3	임	266	266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흥교회	군산시 나운동 825-7			
합계			1,196	479					

고시 제2017-111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일**군 산 시 장**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25번지		
성명(법인명)	한국수자원공사 금·영·섬권역본부장		
하천명칭	경포천	하천등급	지방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전북 군산시 수송동 761-7외 2필(472, 54-47)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및 군산공업용수도 지장관로 이설 따른 하천점용		
점용면적	696㎡ (영구 162, 일시 534)		
최초허가일	2017년 3월 2일		
점용기간	○ 영구점용 : 2017년 03월 02일부터 ~ 영구 ○ 일시점용 당 초 : 2017년 03월 02일 ~ 2017년 09월 01일 변 경 : 2017년 03월 02일 ~ 2017년 09월 30일		

군산시 공고 제2017-1462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7. 9. 1.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7. 9. 1.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3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등록사유	관리부서
공 인 신 조	군산시소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특수우레탄	인증기 노후화로 인한 신규 인증기 도입	소룡동
	군산시장의인 소룡동장전용	한글전서체 3.0*3.0		특수우레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 민원발급용 인증기 도입	소룡동
	군산시소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공인)	한글전서체 2.1*2.1		전자이미지 공인	비용항 무인민원발급 업무 이관 (민원봉사과 →소룡동)	소룡동

4. 폐기등록공인 및 인영(2점)

구분	공인명	글씨·규격	인 영	재료	폐기사유	폐기부서
공 인 폐 기	군산시소룡동장인 민원사무전용	한글전서체 2.1*2.1		특수우레탄	인증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	소룡동
	군산시장의인 민원사무전용 (전자이미지 공인)	한글전서체 3.0*3.0		전자이미지 공인	비응항 무인민원발급 업무 이관 (민원봉사과 →소룡동)	민원 봉사과

군산시 공고 제2017-1472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SMG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5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SMG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23(군산 2국가산업단지 내)

다. 사업시행자 : 에스엠지에너지(주),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라. 주요내용

○ 사업면적 : 54,575㎡

○ 시설규모 : 발전용량 100MW급 1기

마. 사업기간 : 2018. 3 ~ 2020. 4(공사완료시까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가. 공람목적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내용의 주민의견수렴

나. 공람기간 : 2017년 8월 25일 ~ 9월 18일(21일간, 공휴일제외, 초일포함)

다. 공람장소 :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소룡동 주민센터, 미성동 주민센터)

서천군청 (환경보호과, 장항읍 사무소)

※ 군산시 홈페이지, 서천군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3. 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가. 소룡동 주민센터 회의실 : 2017년 9월 18일(월) 14:00

나. 장항읍 읍사무소 회의실 : 2017년 9월 15일(금) 14:00

4. 의견제출(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및 공청회 개최여부)

가. 제출기간 :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2017년 9월 25일까지)

나. 제출장소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공람 기관 또는 군산시로 제출

5. 기타사항

가.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해서는 개별통지 않고 본 공고에 같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환경정책과(☎063-454-3402), 서천군청 환경보호과(☎041-950-4099), 에스엠지에너지주(☎063-460-72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 M G 바 이 오 매 스 발 전 사 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안 요약문)

2017. 8



에스엠지에너지(주)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SMG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나.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23(군산 2국가산업단지 내)

다. 사업시행자 : 에스엠지에너지(주) 대표이사

라.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마.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발전용량 100MW급 1기
- 사업면적 : 약 54,575㎡
- 사용연료 : 목재 펠릿

바. 사업기간 : 2018년 3월 ~ 2020년 4월(공사완료시까지)

사. 사업비용 : 약 3,500억원

아. 사업의 기대효과

- 전기생산을 통한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정책 부응
- 목재 펠릿 사용을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완화 및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부응
- 전원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역 전력수급 안정화 기여
-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효과

자. 사업 추진경위 및 계획

- 2016.11.28 : 발전사업 허가, SMG에너지(주)
- 2017.01.16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및 협의회 개최
- 2017.01.16~01.23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서면 심의 (2월 3일 최종수령)
- 2017.02.13. :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산업통상자원부→사업자)
- 2017.02.20~03.06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공개
- 2017.0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17.09.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 2017.1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제출 및 협의



(그림 2-1) 사업지구 위치도

차.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실시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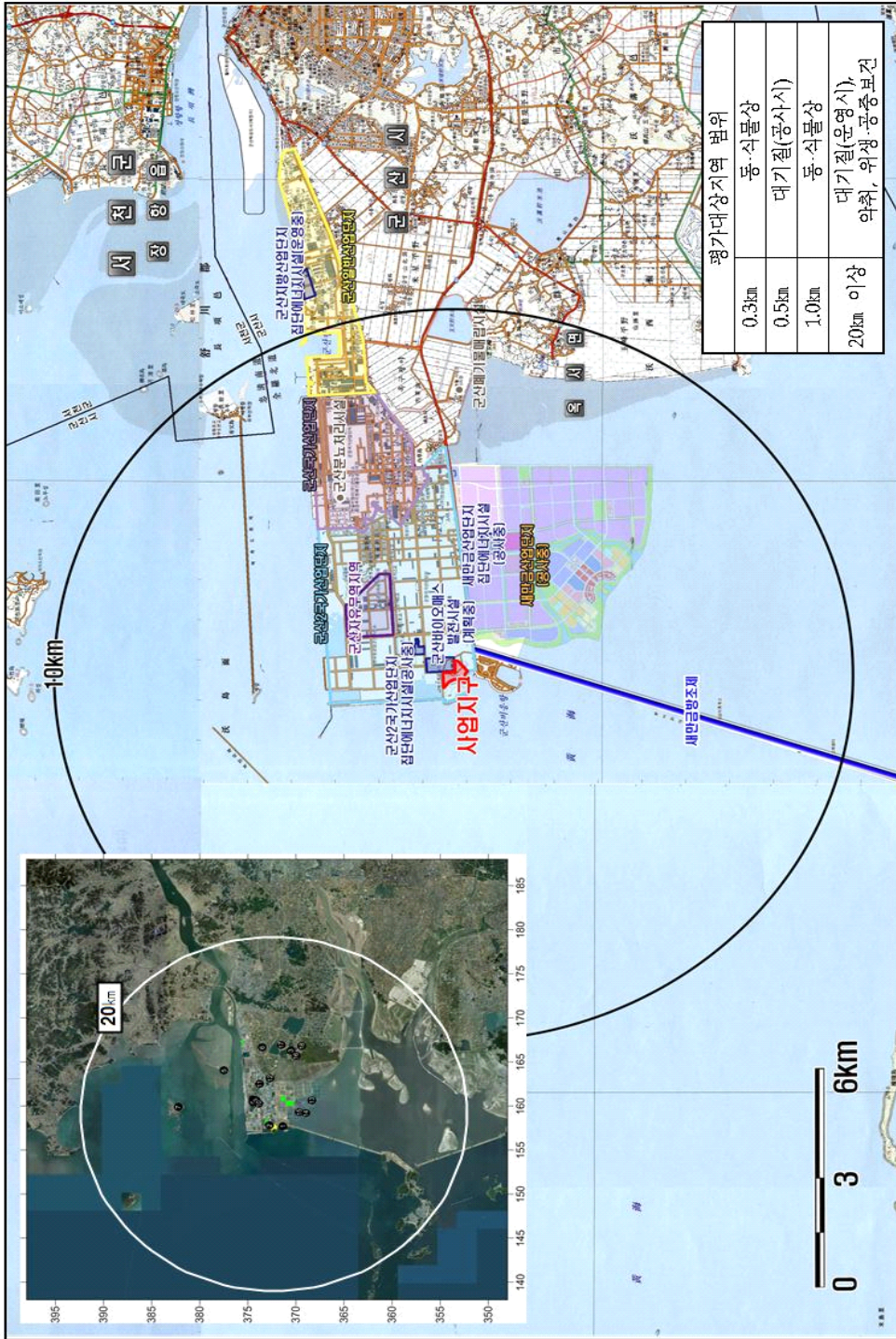
- 사업지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라 발전 용량이 30MW 이상인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
3. 에너지 개발사업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상인 것,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의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것	○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대상사업	○ 사업지구 발전시설용량 : 100MW x 1기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평가항목의 설정

구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육상 및 육수)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1.0km 이내 ※협의회 심의 반영	• 공사시 •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자연환경자산 분포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대기 환경	기 상	• 사업지구 기상자료(지표, 상층)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 운영시 발전소 가동에 따른 냉각탑 배출 증기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역 부지/상층기상 • 기존자료 -군산기상대, 군산산단 AWS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대 기 질	• 공사시 토사 운반차량 및 공사장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발전소 가동, 에너지 사용, 차량운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5km 이내 • 사업지구중심(연돌기준)으로부터 10km 이내 ※협의회 심의 반영하여 20km 이내 모델링 예측	• 공사시 • 운영시
	악 취	• 운영시 발전시설에 의한 악취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중심(연돌기준)으로부터 10km 이내 ※협의회 심의 반영하여 20km 이내 모델링 예측	•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작업차량 증가 및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로 온실가스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운영시

구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내용	평가대상지역	비 고
수 환경	수 질,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부지정지로 인하여 강우시 토사 유출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운영시 점오염원, 비점오염물질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토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해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연료저장시설 운영에 따라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지형·지질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건설장비의 운영에 따른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운영시 운행차량 및 발전시설 가동에 의한 소음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주변 	•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3km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위락·경관	• 시설물의 입지로 Sky Line의 변화 및 주변지형과의 이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전파장해	• 전기공급시설 설치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주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 운영시
	위생· 공중보건	• 사업시행으로 인해 위생·공중보건의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지구 주변 (건강영향평가)	• 사업지구중심(연돌기준) 으로부터 10km 이내 ※ 협의회 심의 반영하여 20km 이내 모델링 예측	• 운영시
사회 · 경제 환경	인 구 주 거	•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활동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운영시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3. 환경현황 조사·예측·분석, 저감방안

구분	분야	환경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감방안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식물(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상 : 122분류군 - 식생 : 나지 100.0% - 식생보전등급 : V등급 100.0% ○육상동물(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유류 : 8종 - 조류 : 47종 - 양서·파충류 : 3종 - 육상곤충류 : 55종 ○법정보호종(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달, 삵, 황조롱이 3종 ○생태·자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등급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는 나지지역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함 ○육상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서식공간이 부적합하여 서식공간 훼손에 따른 영향은 미미함 - 야간시간대에 이동하는 조류의 굴뚝과의 충돌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법정보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보호종의 서식공간에 대한 교란이 발생하지 않으며, 넓은 활동반경을 가진 종들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상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구내 식재가능한 지역향토수종 식재로 녹지공간 확보 ○육상동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돌 상부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설치 ○법정보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연환경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보호종(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삵, 큰기러기, 황조롱이, 매, 참매,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법정보호종(현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달, 삵, 황조롱이 ○야생생물 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소(약 13.8km이상 이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소(약 17.7km이상 이격) ○천연기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소(약 11.5km이상 이격) ○생태계변화 관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약 7.8km이상 이격) ○습지보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소(약 9.0km이상 이격) ○특정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소(약 13.1km이상 이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보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달(사업지구 내부 이용가능한 수계가 분포하지 않아 영향 미미) - 삵(소음·진동 등으로 비교란 지역으로 이동 예상) - 황조롱이(이동능력이 뛰어나며 환경적응력이 높아 영향 미미) - 매·참매(행동반경이 넓어 영향 미미) - 큰기러기(사업지구 주변 먹이터 부재로 농경지 등으로 도래 예상) - 검은머리물떼새·알락꼬리마도요(사업지구 내 서식환경 부재로 영향 미미) ○자연환경자산은 사업지구와 최소 7.8km이상 이격되어 있어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구분	분야	환 경 현 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 감 방 안																																																																																									
대 기 환 경 기 질	기 상	<p><군산기상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기온 : 12.9℃ ○평균풍속 : 2.3m/s ○주풍향 : 북북서(NNW) ○강수량 : 1,252.3mm/년 ○일조시간 : 1,747.8hr/년 ○상대습도 : 7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각탑 배출증기에 따른 영향 -안개, 노면결빙, 일사량감소, 주변 오염물질과의 상호작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연 발생 억제를 위해 하이 브리드 냉각탑 적용 ○연돌(H=100m), 높은 배출 속도로 대기확산 유도 ○비산방지판 설치 																																																																																									
	대 기 환 경 기 질	<p>○일반대기오염물질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현황농도</th> <th>환경기준</th> </tr> </thead> <tbody> <tr> <td>PM₁₀ ($\mu\text{g}/\text{m}^3$)</td> <td>30.2~65.7</td> <td>100(24시간) (만족)</td> </tr> <tr> <td>PM_{2.5} ($\mu\text{g}/\text{m}^3$)</td> <td>18.1~41.0</td> <td>50(24시간) (만족)</td> </tr> <tr> <td>SO₂ (ppm)</td> <td>0.004~ 0.011</td> <td>0.05(24시간) (만족)</td> </tr> <tr> <td>NO₂ (ppm)</td> <td>0.008~ 0.030</td> <td>0.06(24시간) (만족)</td> </tr> <tr> <td>CO (ppm)</td> <td>0.4~0.8</td> <td>9(8시간) (만족)</td> </tr> <tr> <td>O₃ (ppm)</td> <td>0.019~ 0.038</td> <td>0.06(8시간) (만족)</td> </tr> <tr> <td>Pb ($\mu\text{g}/\text{m}^3$)</td> <td>0.0007~ 0.0014</td> <td>0.5(연간) (만족)</td> </tr> <tr> <td>벤젠 ($\mu\text{g}/\text{m}^3$)</td> <td>0.4~0.7</td> <td>5(연간) (만족)</td> </tr> </tbody> </table> <p>○특정대기유해물질 현황</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현황농도</th> </tr> </thead> <tbody> <tr> <td>As ($\mu\text{g}/\text{m}^3$)</td> <td>0.0003~0.0007</td> </tr> <tr> <td>Cd ($\mu\text{g}/\text{m}^3$)</td> <td>0.0001~0.0003</td> </tr> <tr> <td>Ni ($\mu\text{g}/\text{m}^3$)</td> <td>0.0004~0.0007</td> </tr> <tr> <td>다이옥신(pg -I-TEQ/Sm³)</td> <td>0.023~0.026</td> </tr> <tr> <td>나프탈렌 (ng/m³)</td> <td>0.026~0.034</td> </tr> </tbody> </table> <p>-불검출 : Cr⁶⁺, Hg, HCl</p>	구 분	현황농도	환경기준	PM ₁₀ ($\mu\text{g}/\text{m}^3$)	30.2~65.7	100(24시간) (만족)	PM _{2.5} ($\mu\text{g}/\text{m}^3$)	18.1~41.0	50(24시간) (만족)	SO ₂ (ppm)	0.004~ 0.011	0.05(24시간) (만족)	NO ₂ (ppm)	0.008~ 0.030	0.06(24시간) (만족)	CO (ppm)	0.4~0.8	9(8시간) (만족)	O ₃ (ppm)	0.019~ 0.038	0.06(8시간) (만족)	Pb ($\mu\text{g}/\text{m}^3$)	0.0007~ 0.0014	0.5(연간) (만족)	벤젠 ($\mu\text{g}/\text{m}^3$)	0.4~0.7	5(연간) (만족)	구 분	현황농도	As ($\mu\text{g}/\text{m}^3$)	0.0003~0.0007	Cd ($\mu\text{g}/\text{m}^3$)	0.0001~0.0003	Ni ($\mu\text{g}/\text{m}^3$)	0.0004~0.0007	다이옥신(pg -I-TEQ/Sm ³)	0.023~0.026	나프탈렌 (ng/m ³)	0.026~0.034	<p>○공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비투입에 의한 배기가스 발생 및 토사이동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공사시 예측결과(24시간 평균) · PM₁₀ : 42.71~70.22$\mu\text{g}/\text{m}^3$ · NO₂ : 16.03~30.03ppb -환경기준 만족 <p>○운영시(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시 예측농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예측 농도</th> <th>환경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PM₁₀ ($\mu\text{g}/\text{m}^3$) (24시간)</td> <td>본사업</td> <td>42.54~ 65.76</td> <td rowspan="2">100 (만족)</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43.34~ 66.54</td> </tr> <tr> <td rowspan="2">SO₂ (ppb) (24시간)</td> <td>본사업</td> <td>9.15~ 11.24</td> <td rowspan="2">50 (만족)</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11.51~ 14.26</td> </tr> <tr> <td rowspan="2">NO₂ (ppb) (24시간)</td> <td>본사업</td> <td>16.15~ 30.18</td> <td rowspan="2">60 (만족)</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18.07~ 34.47</td> </tr> <tr> <td rowspan="2">CO (ppb) (8시간)</td> <td>본사업</td> <td>601.26~ 800.94</td> <td rowspan="2">9,000 (만족)</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612.32~ 812.28</td> </tr> <tr> <td rowspan="2">납 ($\mu\text{g}/\text{m}^3$) (연간)</td> <td>본사업</td> <td>0.0079~ 0.0110</td> <td rowspan="2">0.5 (만족)</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0.0081~ 0.0113</td> </tr> <tr> <td rowspan="2">벤젠 ($\mu\text{g}/\text{m}^3$) (연간)</td> <td>본사업</td> <td>0.58~0.74</td> <td rowspan="2">5 (만족)</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0.58~0.97</td> </tr> </tbody> </table>	구 분	예측 농도	환경 기준	PM ₁₀ ($\mu\text{g}/\text{m}^3$) (24시간)	본사업	42.54~ 65.76	100 (만족)	본사업 +주변	43.34~ 66.54	SO ₂ (ppb) (24시간)	본사업	9.15~ 11.24	50 (만족)	본사업 +주변	11.51~ 14.26	NO ₂ (ppb) (24시간)	본사업	16.15~ 30.18	60 (만족)	본사업 +주변	18.07~ 34.47	CO (ppb) (8시간)	본사업	601.26~ 800.94	9,000 (만족)	본사업 +주변	612.32~ 812.28	납 ($\mu\text{g}/\text{m}^3$) (연간)	본사업	0.0079~ 0.0110	0.5 (만족)	본사업 +주변	0.0081~ 0.0113	벤젠 ($\mu\text{g}/\text{m}^3$) (연간)	본사업	0.58~0.74	5 (만족)	본사업 +주변	0.58~0.97	<p>○공사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사용 차량규제(차속 20km/hr 이 하) 및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방진시설 설치 -효율적 장비투입 및 공회전 금지 -유지목표농도 설정 (PM₁₀ 80$\mu\text{g}/\text{m}^3$이하(24시간), NO₂ 48ppb이하(24시간)) <p>○운영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허용농도 법적기준 및 설계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오염물질 종류</th> <th>법적 기준</th> <th>설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SO₂(ppm)</td> <td>50(6)</td> <td>30(6)</td> </tr> <tr> <td>NO₂(ppm)</td> <td>50(6)</td> <td>30(6)</td> </tr> <tr> <td>먼지(DUST)(mg/m³)</td> <td>10(6)</td> <td>10(6)</td> </tr> </tbody> </table> <p>주) 배출허용기준의 ()는 표준 산소농도(O₂의 백분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지시설 설치 · 먼지 : 여과집진기(백필터) · 질소산화물 : 촉매탈질설비(SCR) · 산성가스(SO_x, HCl) : 노내탈황, 반건식법 - 연료탄 하역 및 운반대책 · 컨베이어 시스템 Silo, 집진기 설치 	오염물질 종류	법적 기준	설계 기준	SO ₂ (ppm)	50(6)	30(6)	NO ₂ (ppm)	50(6)	30(6)	먼지(DUST)(mg/m ³)	10(6)
구 분	현황농도	환경기준																																																																																											
PM ₁₀ ($\mu\text{g}/\text{m}^3$)	30.2~65.7	100(24시간) (만족)																																																																																											
PM _{2.5} ($\mu\text{g}/\text{m}^3$)	18.1~41.0	50(24시간) (만족)																																																																																											
SO ₂ (ppm)	0.004~ 0.011	0.05(24시간) (만족)																																																																																											
NO ₂ (ppm)	0.008~ 0.030	0.06(24시간) (만족)																																																																																											
CO (ppm)	0.4~0.8	9(8시간) (만족)																																																																																											
O ₃ (ppm)	0.019~ 0.038	0.06(8시간) (만족)																																																																																											
Pb ($\mu\text{g}/\text{m}^3$)	0.0007~ 0.0014	0.5(연간) (만족)																																																																																											
벤젠 ($\mu\text{g}/\text{m}^3$)	0.4~0.7	5(연간) (만족)																																																																																											
구 분	현황농도																																																																																												
As ($\mu\text{g}/\text{m}^3$)	0.0003~0.0007																																																																																												
Cd ($\mu\text{g}/\text{m}^3$)	0.0001~0.0003																																																																																												
Ni ($\mu\text{g}/\text{m}^3$)	0.0004~0.0007																																																																																												
다이옥신(pg -I-TEQ/Sm ³)	0.023~0.026																																																																																												
나프탈렌 (ng/m ³)	0.026~0.034																																																																																												
구 분	예측 농도	환경 기준																																																																																											
PM ₁₀ ($\mu\text{g}/\text{m}^3$) (24시간)	본사업	42.54~ 65.76	100 (만족)																																																																																										
	본사업 +주변	43.34~ 66.54																																																																																											
SO ₂ (ppb) (24시간)	본사업	9.15~ 11.24	50 (만족)																																																																																										
	본사업 +주변	11.51~ 14.26																																																																																											
NO ₂ (ppb) (24시간)	본사업	16.15~ 30.18	60 (만족)																																																																																										
	본사업 +주변	18.07~ 34.47																																																																																											
CO (ppb) (8시간)	본사업	601.26~ 800.94	9,000 (만족)																																																																																										
	본사업 +주변	612.32~ 812.28																																																																																											
납 ($\mu\text{g}/\text{m}^3$) (연간)	본사업	0.0079~ 0.0110	0.5 (만족)																																																																																										
	본사업 +주변	0.0081~ 0.0113																																																																																											
벤젠 ($\mu\text{g}/\text{m}^3$) (연간)	본사업	0.58~0.74	5 (만족)																																																																																										
	본사업 +주변	0.58~0.97																																																																																											
오염물질 종류	법적 기준	설계 기준																																																																																											
SO ₂ (ppm)	50(6)	30(6)																																																																																											
NO ₂ (ppm)	50(6)	30(6)																																																																																											
먼지(DUST)(mg/m ³)	10(6)	10(6)																																																																																											

구분	분야	환 경 현 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 감 방 안						
대 기 환 경	악 취	○악취유발 가능 시설 -군산2국가산업단지, 군산국가·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음 ○현황 조사결과(5지점)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 분</th> <th>현황 농도</th> <th>엄격한배출 허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복합악취 (희석배수)</td> <td>3~6</td> <td>15 (만족)</td> </tr> </tbody> </table> - 배출허용기준(15배) 이하	구 분	현황 농도	엄격한배출 허용기준	복합악취 (희석배수)	3~6	15 (만족)	○발전소 가동시 목재펠릿 연소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악취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구 분	현황 농도	엄격한배출 허용기준							
복합악취 (희석배수)	3~6	15 (만족)								
온 실 가 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연료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 IPCC	○공사시 -온실가스 발생량 : 323.4톤CO ₂ eq/년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량 : 14,358톤CO ₂ eq/년	○공사시 -저탄소 자재 사용 및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15.4톤CO ₂ eq 저감)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운영시 -폐기물적정처리 -녹지조성							
수 환 경	수 질	○지표수질(자료조사) -하천수질환경기준(BOD) Ⅲ~Ⅴ(보통~나쁨)등급 -호소수질환경기준(TOC) Ⅱ(약간좋음)등급 ○지하수질 -일부지역 먹는물 수질기준 이상 -지하수수질기준(공업용수) 이하	○공사시 -우수유출량 : 0.563m ³ /s -토사유출량 : 36.16톤/일 -공사중 투입인력에 의한 영향 · 오수량 : 16.9m ³ /일 · BOD부하량 : 2.51kg/일 -폐유 무단 방류시 지하수오염 예상 ○운영시 -용수소요량 : 7,190.4m ³ /일 · 원수 : 6,932.2m ³ /일 · 순수 : 258.2m ³ /일 -오·폐수발생량 : 2,703.2m ³ /일 · 폐수발생량 : 2,593.2m ³ /일 · 생활오수량 : 110.0m ³ /일 -비점오염원 발생 · BOD 4.632 kg/일, T-P 0.1130 kg/일 증가	○공사시 -사업지구내 침사지 설치 -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은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하여 건기에 시행 -강우 예상시 사면보호시설 설치 -터파기 작업시 토사유출수를 가 배수로를 통하여 침사지로 유입토록 할 계획임 -공사인력에 의한 발생오수는 기존 우수관에 연결하거나 개인오수처리시설 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처리 -지하관정은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처리 ○운영시 -용수는 군산시와 협의하여 군산취수장, 군산정수장 및 오식도 배수지를 통해 공급 -오·폐수는 자체 1차 처리후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연계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구분	분야	환 경 현 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 감 방 안
수 환 경	수 리 수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인근에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은 위치하지 않으며 산단하천인 비응도동수로가 분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및 인근에 하천이 분포하지 않으며 홍수 발생시에도 홍수는 인접한 해양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수리·수문 영향은 미미함 	
	해 양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수질(자료·문헌조사) -생활환경 해양수질기준 초과해역 없음 ○해양수질(자료조사) -pH : 해양수질기준 이하 ○해양수질(문헌조사1) -pH, 총대장균군 : 해양수질기준 이하 -Zn : 해양수질기준 이하 ○해양수질(문헌조사2) -pH, 총대장균군 : 해양수질기준 이하 -Cd, Pb, Zn, As, Hg, Cu : 해양수질기준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해양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가 없으며, 강수시 토사유출 및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영향 예상 ○운영시 -발전소 내 발생 오·폐수 및 강우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간접적 영향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사업지구 내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운영시 -오·폐수는 자체 내 1차처리 후 군산2국가산업단지로 연계처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토 지 환 경	토 지 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토지이용현황 -사업지구는 현재 군산2국가산업단지내 나지로 분포 ○지장물분포 현황 -현재 사업지구는 평탄화된 나지상태이며, 지장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계획 -주보일러, 증기터빈, 용수 및 냉각수 계통 및 환경오염방지설비 등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계획 -배치 계획은 여러 계통의 기기와 이에 따른 건물과의 접근성, 시공성, 운전성, 유지보수성, 안정성, 미관 등과 기능적인 요건이 조화되도록 수립
	토 양 환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양측정결과(자료조사) 군장국가산단 군산지구 폐기물 사후(③S-2지점 기준) -Cu 8.052~9.408 mg/kg -Pb 11.149~14.989 mg/kg -Cd 0.248~0.323mg/kg -As 0.862~1.828 mg/kg -Hg 0.015~0.039 mg/kg -Cr⁶⁺, 페놀, CN, 유기인, PCB, TPH, BTEX 불검출 ○토양오염우려기준(3지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건설장비 운용으로 폐유발생 -공사인부 투입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운영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계획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수집한 후 위탁처리 -분리수거함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폐기물 및 분뇨를 전량 수거후 위탁처리

구분	분야	환경현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감방안																																																																	
생 활 환경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경관심의대상에 해당 ○사업지구는 군산2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하며 부지정지가 완료되어 평탄한 지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획지구의 서측으로 인접하여 산지 및 구릉지가 위치하고 북측 및 서측으로 서해가 위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의 현재 내부 경관은 부지정지가 완료된 나대지 형태로 사업시행후 발전소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가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 및 조경계획, 시설물 색채계획 등을 통하여 경관상의 영향 저감계획 수립 																																																																	
	위생·공중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 종합병원 2개소, 병원 8개소, 의원 151개소 등 -서천군 : 병원 4개소, 의원 33개소 등 ○의료기간 종사 의료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 2,343인 -서천군 : 449인 ○위생 및 숙박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 1,453소 -서천군 : 306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암성물질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예측 위해도</th> <th>위해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Cd (연간)</td> <td>본사업</td> <td>1.80E-07~ 4.52E-07</td> <td rowspan="12"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10⁻⁵ (만족)</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2.11E-07~ 5.38E-07</td> </tr> <tr> <td rowspan="2">Cr⁶⁺ (연간)</td> <td>본사업</td> <td>1.72E-08~ 2.83E-07</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4.99E-07~ 3.14E-06</td> </tr> <tr> <td rowspan="2">As (연간)</td> <td>본사업</td> <td>1.58E-06~ 2.73E-06</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1.98E-06~ 3.85E-06</td> </tr> <tr> <td rowspan="2">Ni (연간)</td> <td>본사업</td> <td>1.08E-07~ 1.63E-07</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2.50E-07~ 5.09E-07</td> </tr> <tr> <td rowspan="2">HCHO (연간)</td> <td>본사업</td> <td>1.24E-08~ 2.04E-07</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1.86E-08~ 2.21E-07</td> </tr> <tr> <td rowspan="2">벤젠 (연간)</td> <td>본사업</td> <td>4.07E-06~ 4.72E-06</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4.20E-06~ 6.88E-06</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예측농도</th> <th>배출허용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다이옥신 (pg/m³) (연간)</td> <td>본사업</td> <td>1.68E-05~ 2.30E-02</td> <td>10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발암성물질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예측위해도</th> <th>위해도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수은 (연간)</td> <td>본사업</td> <td>3.08E-08~ 5.06E-07</td> <td rowspan="8"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 (만족)</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3.55E-06~ 4.31E-05</td> </tr> <tr> <td rowspan="2">염화수소 (연간)</td> <td>본사업</td> <td>1.16E-04~ 1.91E-03</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3.53E-03~ 3.21E-02</td> </tr> <tr> <td rowspan="2">암모니아 (연간)</td> <td>본사업</td> <td>3.25E-05~ 5.34E-04</td> </tr> <tr> <td>본사업 +주변</td> <td>3.74E-04~ 2.18E-03</td> </tr> <tr> <td>황화수소 (연간)</td> <td>본사업</td> <td>2.17E-04~ 3.56E-03</td> </tr> </tbody> </table> 	구 분		예측 위해도	위해도 기준	Cd (연간)	본사업	1.80E-07~ 4.52E-07	1×10 ⁻⁵ (만족)	본사업 +주변	2.11E-07~ 5.38E-07	Cr ⁶⁺ (연간)	본사업	1.72E-08~ 2.83E-07	본사업 +주변	4.99E-07~ 3.14E-06	As (연간)	본사업	1.58E-06~ 2.73E-06	본사업 +주변	1.98E-06~ 3.85E-06	Ni (연간)	본사업	1.08E-07~ 1.63E-07	본사업 +주변	2.50E-07~ 5.09E-07	HCHO (연간)	본사업	1.24E-08~ 2.04E-07	본사업 +주변	1.86E-08~ 2.21E-07	벤젠 (연간)	본사업	4.07E-06~ 4.72E-06	본사업 +주변	4.20E-06~ 6.88E-06	구 분		예측농도	배출허용 기준	다이옥신 (pg/m ³) (연간)	본사업	1.68E-05~ 2.30E-02	100	구 분		예측위해도	위해도 기준	수은 (연간)	본사업	3.08E-08~ 5.06E-07	1 (만족)	본사업 +주변	3.55E-06~ 4.31E-05	염화수소 (연간)	본사업	1.16E-04~ 1.91E-03	본사업 +주변	3.53E-03~ 3.21E-02	암모니아 (연간)	본사업	3.25E-05~ 5.34E-04	본사업 +주변	3.74E-04~ 2.18E-03	황화수소 (연간)	본사업	2.17E-04~ 3.56E-03
구 분		예측 위해도	위해도 기준																																																																		
Cd (연간)	본사업	1.80E-07~ 4.52E-07	1×10 ⁻⁵ (만족)																																																																		
	본사업 +주변	2.11E-07~ 5.38E-07																																																																			
Cr ⁶⁺ (연간)	본사업	1.72E-08~ 2.83E-07																																																																			
	본사업 +주변	4.99E-07~ 3.14E-06																																																																			
As (연간)	본사업	1.58E-06~ 2.73E-06																																																																			
	본사업 +주변	1.98E-06~ 3.85E-06																																																																			
Ni (연간)	본사업	1.08E-07~ 1.63E-07																																																																			
	본사업 +주변	2.50E-07~ 5.09E-07																																																																			
HCHO (연간)	본사업	1.24E-08~ 2.04E-07																																																																			
	본사업 +주변	1.86E-08~ 2.21E-07																																																																			
벤젠 (연간)	본사업	4.07E-06~ 4.72E-06																																																																			
	본사업 +주변	4.20E-06~ 6.88E-06																																																																			
구 분		예측농도	배출허용 기준																																																																		
다이옥신 (pg/m ³) (연간)	본사업	1.68E-05~ 2.30E-02	100																																																																		
구 분		예측위해도	위해도 기준																																																																		
수은 (연간)	본사업	3.08E-08~ 5.06E-07	1 (만족)																																																																		
	본사업 +주변	3.55E-06~ 4.31E-05																																																																			
염화수소 (연간)	본사업	1.16E-04~ 1.91E-03																																																																			
	본사업 +주변	3.53E-03~ 3.21E-02																																																																			
암모니아 (연간)	본사업	3.25E-05~ 5.34E-04																																																																			
	본사업 +주변	3.74E-04~ 2.18E-03																																																																			
황화수소 (연간)	본사업	2.17E-04~ 3.56E-03																																																																			

구분	분야	환 경 현 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저 감 방 안
생활환경	전과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2국가산업단지내에 위치하여 사업지구 인근에는 주거시설이 위치하지 않음 ○사업지구에 생산되는 전력은 지중 송전선로를 이용하여 비응변전소에 연계할 계획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전선로에 의한 전과장해 자료조사 영향검토 결과 당 발전소는 지중선로 설치계획이므로 전과장해에 대한 영향 없음 	-
사회경제환경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총인구 : 283,931명 -세대수 : 114,382세대 ○서천군 -총인구 : 58,143명 -세대수 : 26,622세대 ○최근 5년간 인구추이 -군산시 : 매년 1,500명 이상 증가하고 있음 -서천군 : 매년 250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점점 감소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인부투입에 외부지역으로부터 유동인구 유입이 예상됨 ○운영시 운영인력과 그 가족 등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됨 	-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주택보급율 : 101.4% ○서천군 -주택보급율 : 124.0% ○최근 5년간 주택보급율 -군산시 : 201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15년 감소 -서천군 : 2012년부터 소폭 증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인부투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나 대부분 기존주거시설 또는 가설숙소 이용으로 영구주거지 확보는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 ○운영시 운영인력과 그 가족 등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지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산시 -사업체수 : 22,242개소 -종사자수 : 108,014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가산업단지 3개소, 일반산업단지 2개소, 농공단지 4개소 ○군산시 -사업체수 : 4,766개소 -종사자수 : 19,824인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국가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지역내 도소매업 등 활성화, 지역주민 소득향상 기여 ○운영시 주변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되어 지역경제 측면에서 유리 	-

4.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 사항

- 평가대행자 : (주)도화엔지니어링
- 연락처 : 02-6323-4318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관할기관)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도화엔지니어링	박승우	환평협-987 (환경영향평가협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38	02)6323-4318	02)538-7035